

가업승계 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검토

2023. 11. 30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김완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업승계의 의미와 현행 세제지원

-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¹⁾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그런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사업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의 모호성과 현실성이 부족하고 업무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명확한 실무규정이 없는 게 현실임
 - 타 세법의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과도한 현금이나 타 법인투자주식 등 경영 현실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로 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
 - 특히 사업무관자산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빈번한 상황
- 중소기업 등 가업승계는 가업승계 세제는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가업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나, 사업무관자산의 범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한 타 세법과의 형평성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가업승계세제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검토하여, 개선을 도출하는 것임
 - 가업승계의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와 함께 법인세 등 타 세법에 서 정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와의 형평성을 검토하고자 함

II. 가업승계지원세제 현황

1. 사업승계지원세제 개요

가. 개요

-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여 고용창출 및 유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7년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
 - 이후 수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공제금액도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1세대 경영자의 사망으로 인한 예측치 못한 가업승계보다는 1세대 경영자의 생전에 사전준비를 통해 계획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8년부터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
 - 따라서 현행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존재
 - 본 연구에서는 사업무관자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나.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구조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상이함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액

－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가업상속 재산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① 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 피상속인 및 상속인 측면에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가업측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③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2021년말까지는 3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if,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재산* × 2)

→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 -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 해당 가업상속인이 답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 피상속인측면 : 주식보유기준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적용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 재직요건 : 아래의 3가지 중 1가지 충족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②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측면 : 연령, 가업종사, 취임기준, 납부능력 및 배우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연령 : 18세 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3)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7년(또는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 위배한 경우는 자산처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재계산 ('19.1.1.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
- 사후관리요건으로서 가업용 자산유지 요건, 가업종사 요건, 지분유지 요건 및 고용유지 요건 등 4가지를 적용하고 있음

2. 가업상속공제 현황 및 쟁점

가. 가업상속공제 현황

-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 및 공제금액
 - <표 1>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그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106개 기업으로 4,210억원의 공제금액으로 최근 10년 기간 동안의 최고치를 나타냄

- 10년 간 연평균 62건이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93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60~70건에 약 2~3천억원 수준의 공제를 해주다가 2020년에 89건, 약 4,0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렇게 2016년부터 증가한 현상은 2016년부터 공동상속을 허용해주도록 상속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
- 즉, 2016년에는 다른 연도(2017-2019)보다 낮은 공제건수에 불구하고, 공제금액은 3,183억원으로 지난 10년 중 매우 높은 수준

〈표 1〉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 및 공제금액

(단위 : 건, 백만원)

	과세		과세미달		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2011년	35	30,091	11	2,417	46	32,508
2012년	46	30,707	12	3,638	58	34,345
2013년	60	86,694	10	6,613	70	93,307
2014년	63	94,405	5	4,203	68	98,608
2015년	57	164,454	10	6,139	67	170,593
2016년	60	295,420	16	22,958	76	318,378
2017년	75	189,667	16	32,931	91	222,598
2018년	80	212,724	23	21,697	103	234,421
2019년	75	224,053	13	12,290	88	236,343
2020년	89	401,109	17	19,940	106	421,049

※ 자료 : 국세통계연보 2021.

나. 가업상속제도의 쟁점

□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문제점

- 가업상속공제제도 신청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규모가 크지 않은데,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엄격한 사전·사후요건 등 때문(강성훈, 2019)
 - 2017년을 기준으로, 최대 공제한도는 500억 원인데 반해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은 약 24억 원이며, 특례신청 가능기업 173곳 중 91곳(52.6%)만 가업상속공제 신청
- 잦은 제도 변경은 근본적으로 상속·증여세와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의 정책목적성·취지가 상호 충돌하는데 기인
 - 상속·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완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

- 반면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경영자들의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경제에 기여하는데 목적
- 세제 지원 중심의 지원제도는 조세형평성 측면과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축적된 기술·경영노하우 승계 관점이 대립하게 되는 필연적 한계

* 명문장수기업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세율 개편에 공감대 형성 및 개선(안) 없는 소모적인 논쟁 속에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확산

- 가업승계를 둘러싼 국민들과 경영 현장 간의 괴리가 큰 상황으로, 지원제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
-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일부 기업인의 제도 악용 및 편법 승계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자정노력도 중요
- 가업승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60%), 특권의식 가진 2세 경영자(51%), 승계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47%) (매일경제, 2019.2.6.)
- 일반국민의 ‘가업승계’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불법·편법적인 상속(47.5%), 2세들의 경영권 다툼(36.8%), 독일의 명문 제조기업(5.3%), 관심없음(5.6%) (매일경제, 2019.2.6.)

○ 세부담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면서 축적된 기술·노하우 전수 및 신규 사업 투자에 한계

- 가업승계 계획 및 준비상태가 저조하며, 경영자의 사망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가업승계로 우량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발생
- 후계자가 상속세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으로 대납함에 따라 경영권이 약화

□ 가업상속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의 검토의 필요성

○ (현행 사업무관자산 범위의 검토) 가업상속재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있는데, 사업무관의 판단기준의 모호성과 현실성이 부족하고 업무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명확한 실무규정이 없는 게 현실

- 현행 상속세법상 가업상속재산에 제외시키는 사업무관자산을 크게 5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Ⅲ. 기업승계 세제상 사업무관자산 범위 및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

1. 현행 사업무관자산 범위의 검토

- 기업상속재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있는데, 사업무관의 판단기준의 모호성과 현실성이 부족하고 업무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명확한 실무규정이 없는 게 현실임
 - 2012. 2. 2. 이전에는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기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맞게 가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만 기업상속공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었고, 2014.12.23. 이후 기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특례증여 역시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고려해서 일반증여와 특례증여를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음
 - 2014. 1. 1. 이후 거주자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의 범위와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에 따라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음
 - 하지만 기업승계주식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비율만큼은 기업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제외되므로, 기업승계주식가액의 100%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업무관자산은 기업승계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에서 기업상속재산범위의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상속공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업과 관련 없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상속재산범위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는 것임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 사업무관자산비율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지만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

- ① 법인세법 §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③ 법인세법 시행령 §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④의 과다보유현금 제외)

□ 가업상속재산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 중 실질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사업무관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은 최대 50%를 적용
 - 가업상속공제에 적용하는 사업무관자산비율에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최대 5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업상속재산 중 사업무관자산으로 구분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규정한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및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2. 자산항목별 사업무관자산 분류의 타당성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상속세법상 가업상속재산에 제외시키는 사업무관자산을 크게 5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항목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가. 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내국법인이 특정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규정

-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법인과 개인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
-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는 비사업용토지 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2012년말까지 양도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²⁾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과 비사업용토지 및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³⁾
 -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는 주택,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등을 제외한 법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이 해당
 - 별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비사업용 토지 : 농업, 임업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등을 말하며, 관련 법률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된 자산을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법인세법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는 법인의 업무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부동산과 동산을

2)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4조의2).

3)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없음.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법인의 업무’란 다음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음

○ 업무무관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⁵⁾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함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함

○ 업무무관동산

-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함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함
- 기타 위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임대용 부동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업종은 해당 별표에 주된 업종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음
- 즉,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은 상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유예기간’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같은 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재산범위에서 제외시켜야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에도 적합하다는 것

□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관련 검토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임대부동산의 경우, 상속이후 업무용·자가사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승계이전 보유단계에서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받고 있던 업무무관자산 등을 가업승계 단계에서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는 과도한 불이익으로 원활한 가업승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승계 이후 경영혁신이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도 있고
 - 상속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라 하더라도 승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도 존재

다. 법인세법 시행령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여금의 범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무상대여금, 일반법인의 비영업대금이 포함됨
 - 대여금은 대여상대방에 따라 일반대여금과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주주·임원·종업원 및 관계회사에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이영우 외, 2014)
 - 법인세 집행기준에서는 이자수령 및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익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배제, 대손처리 불가 및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음
 - 이러한 대여금을 법인의 가업상속재산범위에 포함시킨다면 법인사업자금의 외부유

출이 심화되어 법인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재산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적합

라. 과다보유 현금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재산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15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 지폐, 주화, 외화 등의 통화와 타인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 만기도래채권 이자지급표, 배당금지급통지표, 만기도래 약속어음 등 통화와 즉시 교환이 가능한 통화대용증권
- 당좌예금, 보통예금, 증권계좌의 예수금 등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통화성예금으로 요구불예금

○ 기업이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 동기는 크게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세금 동기, 대리인 동기의 네 가지로 구분됨(김윤경, 2014)

- 거래적 동기는 다른 자산을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거래상 지불수단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
- 예비적 동기는 미래의 충격이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부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대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
- 세금 동기는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이 수익을 본국의 본사에 송금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법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 대리인 동기는 경영자들이 기업의 통제권을 강화하여 본인의 재량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당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

□ 과다보유 현금에 대한 검토

- 현금성자산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기의 투자시점을 잡기 위한 예비적 동기의 최적화 행위로서, 현금성자산 보유가 미래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의 150%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회사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규제임
 - 법인에서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설확충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급여 등으로 법인에서 인출하거나,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여 회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법인기업은 여유자금을 단기투자자산 또는 장기투자자산 등으로 운용하다가 상속직전에 채고자산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고
 - 개인기업은 평상시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금 등을 가업승계 지원대상이 되는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음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채권 및 금융상품, 주식에 대해서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재산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영업활동, 주식 등, 채권, 금융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을 일반적으로 제품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으로써,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설명
 -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으로,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설명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도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이라 정의하며,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K-IFRS에 따르면,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하며, 투자활동은 유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제3자에 대한 대여 및 회수활동 등을 포함함

- 한편,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하며,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조달,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포함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을 거래당사자간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여기서 금융자산이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고, 금융부채는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말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6.1에 따르면 “금융상품 중 '소유지분에 대한증서'의 예로서는 투자주식, 출자금 등을 들 수 있으며 '금융자산·부채'의 예로는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신용파생상품 등을 들 수 있음(한국회계연구원, 2003)

○ 결국 주식 등, 채권, 금융상품은 기업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지분증권이란 발행한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소유자가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에 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해 경영에 참가권이 있으며, 만기가 없는 영구적인 증권
- 채무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등과 같이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로서 발행회사의 채무임을 나타내는 증권

○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대부분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가업상속재산범위에서 가업과 무관한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차이에 따른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동종업종 조합 등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제공, 현금예치 또는 출자를 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정현주, 2016)

- 이는 관련업의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신규등록이나 갱신을 위해서는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등을 신규 등록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된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보증보험에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종에 따른 법정자본금의 20%이상을 예치하여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각 업종별 최소출자좌수 이상을 예치하여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한 출자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됨
- 이처럼 보증보험에 예치된 예치금과 조합출자금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없어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채권 및 금융상품을 전액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주식을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면서 투자주식을 관계기업, 공동기업, 종속기업 주식으로 분류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분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음(손상익, 2013)
- 2015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2015.4.16.예규에 따르면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전혀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있음
- 그 이유는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인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투자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임(서면법규과-842, 2014. 8. 11.)

- 특히 자회사의 영향력·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해서 모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음
- 해당 자회사의 업종, 상호거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영업활동과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상품 등에 대한 검토

- 앞의 예치금과 조합출자금을 포함하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은 전부 영업활동에 관한 기준이 부족하여 모두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인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부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에 해당됨
 -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은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업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배제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음
 -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업종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적이고, 상호간에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자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 등 모든 의사결정이 모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영업활동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야함

3. 사업무관자산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검토

가. 사업무관자산과 관련된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검토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다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청 질의회신(예규)

○ 서면-2016-상속증여-4450, 2016.08.31.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상속증여-0456, 2015.04.21.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450, 2014.11.20.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서면법규과-842, 2014.08.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705, 2010.09.17

-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 과세관청의 입장

○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또는 자회사)의 주식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대부분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하였음
- 이로 인하여 납세자와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무관자산과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검토

□ 조세심판원의 주요 결정례 검토

- 조세심판원의 주요 결정례를 “사업무관”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총 318건 이중 상증세법에
는 20건이 검색됨(2022.12.31. 기준)
 - 20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살펴본 결과, 가업승계와 무관한 심판결정례가 4건(비상장
주식 평가 3건, 자산수증이익 관련 1건), 영농상속공제 관련 심판결정례이나 사업무
관자산의 범위가 아닌 2건(농업종사여부1건, 축사와 퇴비의 정의에 대한 1건)을 제
외하면 14건이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성에 대한 다툼이었음
 - 14건의 분포는 인용 6건(재조사 1건 포함), 기각 8건으로 나타남
 - 또한 2017년 인용된 사례 이전에는 모두 기각되어 오다가, 해당 사례 이후로 인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표 2〉 ‘사업무관’ 키워드 심판청구의 분포

구분	합계	법인	소득	부가	양도	상증	관세	지방	기타
합계	318	127	74	68	6	20	1	13	9

□ 심판결정례 검토 결과

- 쟁점이 되는 사업무관자산은 대부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
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에 대한 것임
- 과거의 심판결정례들은 문언 그대로 형식에 치중한 해석을 보이고 있었음
 - 기각된 심판결정례들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를 근거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같은 항 제2호 마목
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
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취지는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
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데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본 질의회신과 같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를 문언 그대로 해
석하여, 재무보고시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실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하여
‘투자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반해, 최근 인용된 다수의 심판결정례들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하

고 있음

-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쟁점기업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 등을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선급임차료를 사업무관 대여금으로 보지 않은 심판결정례(조심 2020서0024, 2020.06.30.)에서는 다른 세법에서 해당 임차료를 어떻게 취급하였지와 무관하게 기업상속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최근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판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봄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해서는 안됨

다. 사업무관자산과 관련된 판례 검토

□ 관련 판례 검토

-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라는 기본원칙이 내제되어 있음
- 조세법률주의에서는 해석상의 원칙으로 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됨(대법원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다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978 판결도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각 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
 - 특히, 동 항의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영업활동의 해석을 기존 과세관청의 입장과 같이 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주식, 채권)에 대해서는 사업무관자산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 기존 과세관청의 해석을 긍정하는 판례의 입장

-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산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구제금융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를 별개로 보아 계열회사의 영업활동은 당해 회사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2389 판결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 기존 과세관청의 해석을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

- 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3.13. 선고 2017누

71125 판결, 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 판결은 문리해석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나치게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이며,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분할, 타 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하였음
- 중소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당해 공장은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어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비하여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방법 이외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볼 경우, 해외에 진출하여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에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주식으로 보았음
-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음
- 즉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지,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4.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해외입법례 검토

가. 독일

□ 독일의 가업승계세제지원 제도

- 독일은 1993년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법이 개정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기업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감면규정을 두고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음(최천규, 2011)
 - 특히, 독일은 가족기업이 중소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미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가업승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2)
 - 중소기업을 상속으로 승계 받아도 그 기업을 취득하는 상속인의 부담능력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한다면 사업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산업이 침체되고 실업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 2009년 관리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자산은 우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이 시기에는 가업승계시 시가가 아닌 장부가치로 기업재산에 대한 자산평가가 가능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연부연납도 가능하였음
 - 그 이후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확대하고 감면대상 기업재산의 범위도 확대함
-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이 된 2009년 개정 상속세법 제13a조와 제13b조에서는 기업재산, 농업재산 및 임업재산, 자본회사에의 25% 초과 참여지분을 가업용 자산으로 증여 내지 상속받은 자는 85% 비과세를 원칙으로 가업상속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100% 비과세를 사후 변경불가조건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서보국, 2019)
- 가업상속에 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감면의 경우 이전받은 사업용 자산의 85%가 비과세(구 상속세법 제13a조 제1항 1문 및 동법 제13b조 제4항)
 - 이때 총사업용 자산 중 관리자산의 비율이 50% 이하여야 하고, 승계 후 5년간 급여총액이 가업승계 연도의 급여총액의 400%이상이어야 함
- 사업승계 후 7년간 가업유지의무요건을 선택한 경우 상속재산의 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이때 관리자산의 비율이 10%를 넘길 수 없고, 승계 후 7년간 급여총액이 가업승계 연도의 급여총액의 700%이상이어야 함

- 그리고 당해 사업을 법으로 정한 유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부여받은 세제 혜택을 기간 안분하여 사후 추징하고, 급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급여총액이 미달한 부분만큼 안분하여 세제혜택을 축소함(류형구, 2015, p.196)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4. 12. 17. 위에서 살펴본 2009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에서, 가업상속비과세를 규정한 제13a조와 제13b조에 대해 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개별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용부 헌법불합치 및 입법개선의 무 결정을 하였음

-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6. 7. 1.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관리자산(administrative assets) 또는 수동자산(passive assets)이 사업자산의 일정비율(50% 또는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여기서 관리자산 또는 수동자산이란 위험부담 없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임대 자산, 주식이나 지분 등 투자자산, 예술품, 골동품, 도서, 수집품, 귀금속 및 보석류 등을 의미

- 관리자산 또는 수동자산이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85%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과세하지 않음(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지 못함)

□ 독일의 관리자산 의미의 변화

- 2016년 이전의 독일의 관리자산이란, 위험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서 고용창출도 없고 국민기여도 유발하지 않는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을 말함(조봉현, 2013)

- 독일의 (구)상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리재산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자본 회사에의 25% 이하 참여지분, 관리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회사에의 참여지분과 자본회사에의 25% 초과 참여지분, 유가증권 및 유사한 금융채권, 예술품, 예술수집품, 학문적 수집품, 도서관 및 서고, 동전, 에텔메탈 및 에텔 금속(최갑선, 2015)

- 가업상속공제는 전체 사업용자산 중 관리자산의 비율이 최대 50% 이하에 해당하여

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유한 의미의 사업용자산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자산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

- 2016년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독일의 관리자산의 개념은 관리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강화하였음(독일 상증세법 §13b)
 - 관리자산에 대한 범위가 예술작품 및 수집품, 학문적 수집물, 도서, 화폐, 귀금속과 보석 등의 외에도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과 같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되었음
- 85% 공제의 경우 비사업용자산비율이 10% 이하로 강화되었음
 - (이전) 관리자산의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 50% 이하인 경우
 - (개정) 관리자산의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 10% 이하인 경우(2년 이하 보유자산의 경우 공제불가)
- 100% 공제의 경우 비사업용자산비율은 그대로이나, 20%인 경우도 신청은 가능
 - (이전) 관리자산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 장부가치 10%
 - (개정) 관리자산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 시장가치 10(20)%⁶⁾

나. 영국

- 영국은 가업상속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로서 상속과 증여의 구분 없이 사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를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은 사업자산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자산에 속하는 것으로써 적격요건을 갖춘 자산의 이전이어야 함
 - 적격한 자산이란 ①중요사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의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②양도자(transferor)의 소유권 유지기간 요건(minimum period ownership)을 만족하고 ③ 판매계약에 귀속되지 않은 자산이어야 함
 - 주식인 경우 추가적인 요건으로 ①해당 회사가 청산 중에 있지 않아야 하고, ②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③적격사업(qualifying business)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산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 : ① 비영리사업 관련 자산, ② 주로 주식,

6) 관리자산이 기업의 전체 자산가치의 10% 초과 20% 미만일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동산 등을 거래·투자하는 사업 관련 자산, ③ 자산을 이전하기 전 2년 동안 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미래에도 사용되지 않을 자산, ④ 청산 중에 있는 사업, ⑤ 농업자산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⁷⁾

○ 영국의 기업자산공제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첫째, 중요기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이 이전되어야 함

* 중요기업자산 : ①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지분을 구성하는 자산, ②주식이전으로 회사의 통제권(의결권의 50%초과 지분)이 이전되는 비상장회사의 유가증권, ③모든 비상장주식 주식이전으로 회사의 , ④ 통제권이 이전되는 상장회사의 주식, ⑤토지, 건물,기계, 설비로서 이전하기 전에 양도자가 통제하는 회사의 사업에 전부 또는 주로 사용되었던 것, ⑥토지, 건물, 기계, 설비로서 이전하기 전에 양도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전부 또는 주로 사용되었고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안종석 등, 2014)

– 둘째,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이전하기 전 최소 2년간 사업용자산으로 이용·유지 하였어야 함

– 셋째, wholly or mainly test를 실시하는데, 이는 사업용자산은 전부 또는 주로 사업 목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미임⁸⁾

* 이전될 기업이 전부 또는 주로(wholly or mainly) 유가증권, 토지나 건물 또는 단순히 투자의 유지와 관리로 이익의 50% 이상을 투자활동으로 획득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넷째, 이전시점에 재차의 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자산이전 시점에 사업용자산의 재차 이전 계약이 있다면 기업자산공제는 배제됨

– 다섯째, 증여의 경우 7년 기간 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며, 수증인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증여 후 7년 이내에 증여자의 사망까지 유지하여야 함⁹⁾

○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승계받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100(50)% 공제함

7) 영국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business-relief-inheritance-tax/what-qualifies-for-business-relief>), 최종 방문일 2022. 5. 8.

8) 박종수(2009)에 따르면 “Caravan Parks와 Real Estate Companies사건에서 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이 단기적으로 사업투자에 사용될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업자산공제에서 제외하고, 청산과정 중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이익획득의사가 없는 기업행위도 기업자산공제에서 제외”시킨다. wholly or mainly test는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하지만 기술적으로 생산적인 사업용자산과 비생산적인 사업용자산을 구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자산공제의 대부분 법원결정들은 wholly or mainly test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고 있는데, wholly or mainly test는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어려운 정의와 계량화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9) 만약 수증자가 해당 사업용자산을 이전하거나, 해당 자산이 7년 이내에 중요기업자산이 아니게 되면 기업자산공제는 일부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류형구, 2015).

- 100% 공제대상 : 비상장주식 또는 사업에 대한 지분
- 50%공제대상 : 의결권 50%이상의 상장주식, 소유하고 통제권을 가졌던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

다. 일본

□ 일본은 2008년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김희선, 2020)

- 일본의 기업승계지원제도의 특징은 기업승계 목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전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유예한 뒤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면 완전히 유예된 세액의 납부를 면제해 준다는 것
- 세제지원
 - ① 승계대상 기업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를 한도로 하여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유예
 - ② 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계속 기업주식을 보유하면 납부 유예된 상속세를 면제함
- 적용대상기업
 -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산관리회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적용받을 수 있음
 - 자산관리회사는 비사업용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인 회사(자산보유형 회사) 및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사업용 자산 운영 수입이 75% 이상인 회사(자산운용형 회사)를 의미함
 - 지분을 50%를 초과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 2018년에는 법인판 사업승계세제, 2019년에는 개인판 사업승계세제 특례를 창설하여 향후 5년간 사업승계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신상철, 2019)

- 2018. 4. 1. 법인판 사업승계세제의 특별조치를 창설
 - 2018. 4. 1.부터 2023. 3. 31.까지 5년간 경영승계원활화법에 따른 특별승계계획을 도도부현 지사 등에 제출하여 인정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2018. 1. 1.부터 10년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상속 및 증여를 대상으로 함
 - 승계대상 기업주식 총수의 상한을 폐지하고, 납부유예 비율도 100%로 확대
- 2019. 4. 1. 개인판 사업승계세제의 특별조치를 창설

- 2019. 4. 1.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때에 과세되는 상증세가 납부유예 또는 면제되는 특례를 창설
- 2019. 4. 1.부터 2024. 3. 31.까지 5년간 경영승계원활화법에 따른 특별승계계획을 도도부현 지사 등에 제출하여 인정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2019. 1. 1.부터 10년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상속 및 증여를 대상으로 함
- 사업용택지(400㎡까지)·건물(800㎡까지), 기계·기구비품 등의 폭넓은 사업용자산을 대상으로 함

〈표 3〉 주요국과의 사업무관자산 규제 비교

구 분	사업무관자산비율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독일	사업무관자산비율(=관리(수동)자산/총자산 가액)이 - 50% 초과 : 공제 불가 - 50% 이하 : 85% 공제 - 10% 미만 : 100% 공제	관리(수동)자산이란 위험부담 없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임대자산, 주식이나 지분 등 투자자산, 예술품, 골동품, 도서, 수집품, 귀금속 및 보석류 등을 의미. 해당 범위가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과 같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되고 있음
영국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승계받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100(50)% 공제함 - 100% 공제대상 : 비상장주식 또는 사업에 대한 지분 - 50%공제대상 : 의결권 50%이상의 상장주식, 소유하고 통제권을 가졌던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	① 비영리사업 관련 자산 ② 주로 주식, 부동산 등을 거래·투자하는 사업 관련 자산 ③ 자산을 이전하기 전 2년 동안 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미래에도 사용되지 않을 자산 ④ 청산 중에 있는 사업 ⑤ 농업자산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일본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일정 이상이면 적용배제(자산관리회사) - 자산보유형 회사 : 비사업용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회사 - 자산운용형 회사 :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사업용 자산 운영 수입이 75% 이상인 회사	기업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 등
한국	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만큼 기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①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구 분	사업무관자산비율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④의 과다보유현금 제외)

V. 기업승계세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 (자산항목별 사업무관자산 분류의 타당성) 현행 상속세법상 기업상속재산에 제외시키는 사업무관자산을 크게 5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 법인세법§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 －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차용된 자산, 타인임대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주식 등은 분류의 체계성이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
 - 특히, 임대부동산, 현금, 주식 등은 기업승계에 따른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류한 계정으로 판단되나 과도한 규제의 성격이 존재
 -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임대부동산의 경우, 상속이후 업무용·자가사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는 문제가 발생함
 - － 승계이전 보유단계에서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받고 있던 업무무관자산 등을 기업승계 단계에서 기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는 과도한 불이익으로 원활한 기업승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특히, 승계 이후 경영혁신이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도 있고, 상속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라 하더라도 승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도 존재
 - 과다보유 현금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은 개별 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이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

- 현금성자산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기의 투자시점을 잡기 위한 예비적 동기의 최적화 행위로서, 현금성자산 보유가 미래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의 150%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회사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규제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은 전부 영업활동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모두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인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에 해당될 여지가 많기에, 이러한 자산들은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계회사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 원활한 소재·부품·장비 등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일지라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

□ (타 세법의 사업무관자산 범위와의 형평성)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등을 그대로 가업승계에 적용하는 것은 자산 보유관리단계와 승계단계의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함

○ 승계이전 보유단계에서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받고 있던 업무무관자산 등을 가업승계 단계에서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는 과도한 불이익으로 원활한 가업승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승계 이후 경영혁신이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도 있고
- 상속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라 하더라도 승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도 존재

○ 또한 사업양도가 아닌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승계를 목적하는 가업승계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다른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업무무관자산 기준을 가업승계단계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가업승계의 의지를 소진시키는 부작용이 존재

- 따라서 가업상속재산에는 포함시키되 승계이후에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불이익(감가상각 손금불산입 등)하는 방안이 필요

□ (관련 판례 및 심판결정례의 입장) 쟁점이 되는 사업무관자산은 대부분 상증법 시행령 제15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에 대한 것

○ 과거의 심판결정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문언 그대로 형식에 치중한 해석을 보이고 있었음

- 기각된 심판결정례들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를 근거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취지는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데 있다는 점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재무보고시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실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하여 투자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이에 반해, 최근 인용된 다수의 심판결정례들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음

-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쟁점기업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 등을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선급임차료를 사업무관 대여금으로 보지 않은 심판결정례(조심 2020서0024, 2020.06.30.)에서는 다른 세법에서 해당 임차료를 어떻게 취급하였지와 무관하게 가업상속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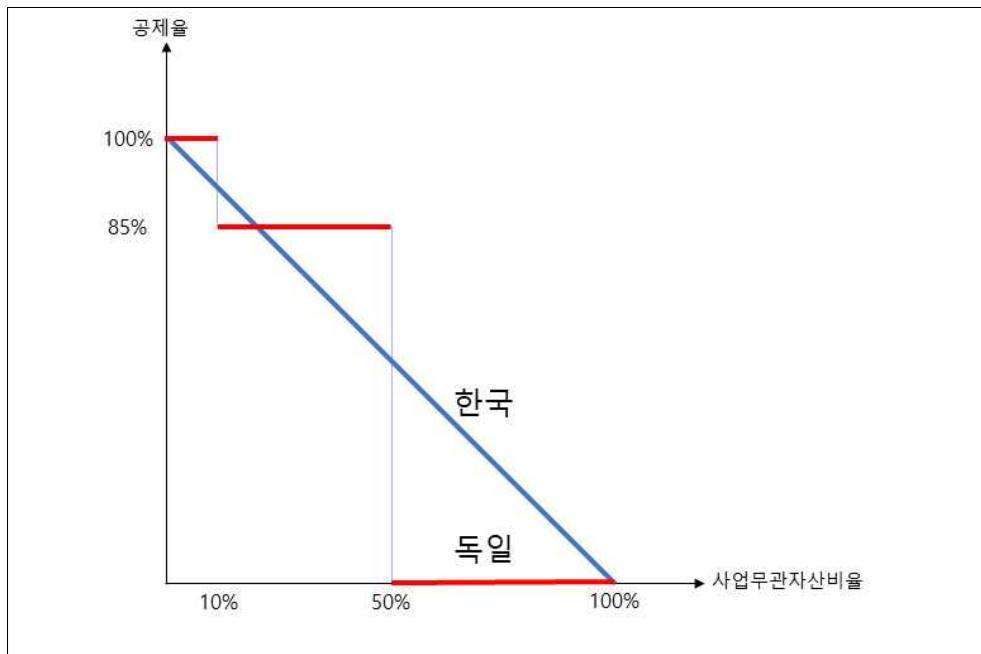
○ 이러한 변화는 최근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해서는 안됨
- 즉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지,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인 매도 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 해외사례 시사점

- 독일의 경우,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공제액에서 제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리자산비율을 50(10)%로 정하고 있음
 - 한국 : $\text{상증법상 주식평가액} \times [1 - (\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
 - 독일 : $(\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 이 50% 이하 : 85% 공제
 $(\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 이 10% 미만 : 100% 공제
 $(\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 이 50% 초과 : 공제 불가
 - 즉, 우리나라는 사업무관자산의 비율만큼 공제를 하지 않는데 비하여(선형 구조) 독일은 기준점 이하인 경우에는 100(85)% 공제는 계단식 구조를 가짐
 -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종류별로 100%와 50% 공제율을 적용함
 - 일본은 사업무관자산비율이 70%이상이거나 사업무관수익금액비율이 75% 이상인 경우 적용을 배제함

[그림 1] 사업무관자산비율에 따른 한국과 독일의 공제율 비교



- 또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있어서, 독일의 경우 매우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음
 - 관리자산에 대한 범위가 예술작품 및 수집품, 학문적 수집물, 도서, 화폐, 귀금속과

보석 등의 외에도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과 같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되었음

- 이는 막연하게 5가지 범주로 사업무관자산을 정의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법령 해석에 있어서 보다 용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는 비영리사업관련, 주식과 부동산 투자사업 관련¹⁰⁾, 과거 2년·향후에도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승계받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100%공제(비상장주식 또는 사업에 대한 지분), 50%공제(의결권 50%이상의 상장주식, 소유하고 통제권을 가졌던 유형자산)로 구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공제가 아닌 과세이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와는 다른 입장이지만,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음

□ 사업무관자산의 입법적 개선방안

○ 현재 사업무관자산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각호들의 범위임

- 특히, 영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주식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에 불구하고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최근 판례와 심판결정례에서 이러한 해석에 관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주식 등 금융자산 외에도 항목별로 그 범위를 검토한 결과 업무무관자산, 임대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항목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해당 조문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독일) 기업승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주식·부동산 투자로 인한 소득이 대부분인 기업이 아니라면 공제를 해주는 방식(영국)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사업무관자산비율만큼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10) 영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업 기업이 전부 또는 주로(wholly or mainly) 유가증권, 토지나 건물 또는 단순히 투자의 유지와 관리로 이익의 50% 이상을 투자활동으로 획득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업의 이익의 대부분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활동을 통해 획득된다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열거의 범위를 늘리기보다는 동 조문의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영국의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즉,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그 유지를 통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연구논문]

- 강석훈. 2017.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정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윤경. 2014.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세미나자료. 한국경제연구원
- 김희선.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류형구. 2015.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조세지원제도의 남용에 따른 조세회피 문제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1권 제1호. pp. 185-216.
- 박종수. 2009. “상중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pp. 45-82.
- 서보국. 2019.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가업상속공제와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pp. 83-120.
- 손상익. 2013. 『기업회계기준해설』. 한국세무사회.
- 신상철. 2019. 『중소기업 사업승계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오윤환, 김은아, 박찬수. 2020.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STEPI Insight, 1-33.
- 이영우, 최종기. 2014.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 정현주. 2016. “가업승계제도에서 사업무관자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봉현. 2013. “독일의 가업상속세 감면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2호. pp. 1-17.
- 최갑선, 2015, “독일가업재산승계와 상속세감면제도”. 중견기업연구원.
- 최천규. 2011.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1집. pp. 175-241.
- 최혜원. 201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제외시 사업양수도 인정 여부에 대한 소고”. 조세법연구 19(2), 361-394.

[책자 및 보도자료]

- 국세청. 2016. 『중소·중견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상속·증여세』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업은행경제연구소. 2012. 「독일 중소기업 CEO 고령화」 연구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2019. 「2019년도 중소기업 현황」
- 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 IBK경제연구소. 2019.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 분석」, Weekly IBK 경제브리프, 제634호.

매일경제, 가업승계에도 반기업 정서... '명문기업·백년가업' 인식 10%뿐, 2019.2.6.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2/73947/>)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main.jsp)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조세심판원 (<https://www.tt.go.kr/main/main.do>)

독일 연방법 홈페이지 (<https://www.buzer.de/gesetz>)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www.nta.go.jp)

일본 중소기업청. 2019. 「事業承継・創業政策について.」

(<https://www.chusho.meti.go.jp/koukai/shingikai/kihonmondai/2019/download/190205kihonmondai02.pdf>.)